

(첨부1)

표준 약관 개정(안) 주요내용

I 개정사유 및 내용

<자율규제개혁 관련>

저축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 확대

※ 개정대상 : 여신거래약정서

- (개정사유 및 개정내용) 현행 표준규정은 저축은행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중 타업권에서 수취하는 수수료까지 제한하여 영업을 제한

- PF대출 수수료 등 타업권에서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

* PF대출수수료 및 기업한도거래수수료(한도약정수수료, 약정 한도미사용 수수료) 추가

야간금고의 해지 사유 명확화

※ 개정대상 : 야간금고약관

- (개정사유 및 개정내용) 현행 표준규정은 야간금고의 일시중지 및 해약 사유가 매우 포괄적·추상적으로 되어있어 구체화 필요

- 야간금고 사용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축은행의 필요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

<표준 규정 및 약관 정비 TF 관련>

난해한 문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

※ 개정대상 :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제1조 / 대여금고약관 제5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8조 / 야간금고약관 제3조 / 현금카드이용약관 제2조 /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/ 체크카드 회원약관(개인회원용) 제20조 /

- (개정사유) 사문화된 용어 등 난해한 문구로 인해 임직원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

- (개정내용) 금감원이 마련한 “알기쉬운 금융용어*” 내용 및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(15.12월)」 등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용어 및 사문화된 용어 등 난해한 문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

* 어려운 금융용어 개선 관련 안내(법규제도부-59, '13.06.19)

- 또한, 오탈자 등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아 의미를 명확화

금융환경 변화 및 업계 영업현실 등 반영

※ 개정대상 : 여신거래약정서 제11조 /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11조 /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분류표 추가 /

- (개정사유)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한 규정이나 업계 영업현실과 동떨어진 약관 및 규정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영업을 제약하는 문제 발생

- (개정내용) 금융환경 변화 및 업계 영업현실 등을 감안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 개정

- 또한, 금융이용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등을 간소화 하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

II 신·구조문 대비표 [첨부 2] 참조

IV 시행일자 : 2017. 8. 11.

(첨 부2)

표준 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【여신거래약정서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6조(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) 한도 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(한도) 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	제6조(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) -----여신(한도)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(한도)금액 중 ----- ----- ----- -----.	별도 약정에 의한 수수료 수취 범위를 추가

【여신거래약정서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 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승인증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	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-----합계잔액시산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	서류간소화(회원업무391, '16.6.17) 내용 반영

【야간금고약관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5조(해지) ①야간금고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<u>않는</u> 경우, 기타 저희 상호저축은행 사정으로 <u>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해지) ①야간금고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<u>않거나, 당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또는 금고의 이전·교체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래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금고의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포괄적·추상적 해지사유 구체화</p>

【야간금고약관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3조(입금내용 상위시의 처리)</p> <p>입금한 현금, 어음,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<u>상위할 경우에는</u>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합니다.</p>	<p>제3조(입금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의 처리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서로 다를 경우에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
【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(약관의 적용) 이 약관은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(이하 '저축은행'이라 합니다)과 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(이하 '증권회사'라 합니다)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“주식매입자금대출”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제1조(약관의 적용)----- ----- ----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오기 정정</p>

【대여금고약관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5조(열쇠의 보관) 대여금고 열쇠는 개중 예비열쇠는 저희 상호저축은행 직원 입회하에 열쇠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보관시켜야 하며, 상용열쇠는 거래처가 교부받아 <u>대여금고 개비시</u>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5조(열쇠의 보관)----- ----- -----<u>참관하에</u> ----- ----- -----<u>대여금고를 열 때</u> -----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<p>제6조(개비) ① 수동형 대여금고를 열 때에는 대여금고 개비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용열쇠로 <u>개비하여야</u> 합니다. ② 자동형 대여금고를 열 때에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용열쇠로 개비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6조(열람) ①----- -----<u>열람신청서</u> ----- -----<u>를 열어야</u> 합니다. ②----- -----<u>열어야</u> 합니다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<p>제7조(폐비확인) 대여금고 사용 후에는 거래처가 반드시 폐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폐비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제7조(잠금확인) ----- -----<u>금고가 완전히</u> <u>잠겨 있는지를 확인하여야</u> 하며,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----- -----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<p>제8조(임의개비) ① (생략) ②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함이 없이 <u>개비</u>에 응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8조(임의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<u>열람</u>에 -----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<p>제18조(면책) ① 신고된 인감(또는 비밀번호)과 상용열쇠를 지참한 자에게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대여금고 개비에 응하여 드린 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제18조(면책) ①----- ----- ----- <u>대여금고를 열어준 때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금감원 '알기쉬운 금융용어' 내용 반영</p>

【현금카드이용약관 개정(안)】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(지급기에 의한 인출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절차 후 통장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2조(지급기에 의한 인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----- -----이 체 및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됩니다. ----- ----- ----- -----이체 및 인출 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의미 명확화</p>

【체크카드 회원약관(개인회원용)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20조(카드이용 정지 및 탈퇴) ① ~ ③ (생 략)	제20조(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의미 명확화

【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p> <p>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,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), 곧 이를 변제(또는 이행)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p> <p>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파산·회생·개인회생절차개시의</u>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의미 명확화</p>

【지급보증거래약정서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</p> <p>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부채현황표, <u>판매처</u>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</p> <p>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</p> <p>4. 수 시 : 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</p>	<p>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, 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판매처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판매처 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----- <u>합계잔액시산표</u>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</p>	<p>서류간소화 (회원업무391, '16.6.17) 내용 반영</p>

【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개정(안)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u><신 설></u>	<u><별첨> 참고</u>	서류간소화 (회원업무, '16.6.17) 내용 반영